

##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어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5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2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 (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높아졌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멀리하게 되어 외톨이 생활이 계속 되지만 한편으론 평생 처음 ‘인류애’라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한다.

대학은 개강연기에 이어 2주간 원격강의를 하고 있고, 추가로 1~2주의 원격강의를 더하기로 하면서 4월이 되어도 학생들이 없는 대학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이어진다. 온라인강의를 준비하다보니 경험이 전혀 없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힘겨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설픈 강의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텅 빈 강의실에서 노트북의 카메라 앞에 홀로 서서 강의를 하려니 몇 째를 수밖에 없고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하는지 강의 중에도 조바심이 생기기도 한다. 차츰 익숙해지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계속 하라고 하면 당장 그만 두고 싶은 심정이 겹쳐진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개학을 계속 연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학 부근이 아니라도 웬만한 커피숍에는 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학원이나 사설독서실, 심지어 PC방이나 클럽 등에도 젊은이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집에 조용히 혼자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대낮에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최근의 마스크대란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무슨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계속 마스크를 벗자고 권유하여 2시간 동안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마스크를 쓰고 청와대 내 회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의 영향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통령을 자주 보게 된다. 마스크 없는 회의도 괜찮은데, 왜 강의는 할 수 없을까. 오히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를 따르게 하면서 대면

강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면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어쨌든 이번에 일반 대학에서는 온라인강의를 사실상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지만 이미 세상은 온라인시대에 와있는 것 같다.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보다 인터넷 강의에 더 익숙하고, 책도 대부분 온라인구매를 하고 있다. 대형서점에 가보아도 법학코너는 이전과 달리 너무 초라한 모습이다. 아파트 복도마다 배달물품이 쌓여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선거공약으로 온라인 내지 방송대 로스쿨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강의 시대가 엄청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25개나 로스쿨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앞으로 대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어렵고 긴장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

(출처/법률신문)